

##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의 견 서

한기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지방세법령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본 조례의 목적 사항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

주민세의 세목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'20. 12월 개정됨에 따라, 균등분 주민세의 명칭을 개인분 주민세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

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

2021. 2. 25.

재무국장 이 병 한